〈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 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 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 난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21536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21.11.15 isensfb@isens.camp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 2024.11.20

생전포차 정보공개서

㈜아이센스에프앤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4. 10. 21.

㈜아이센스에프앤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 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804호(구로동,에이스테크노타워8차)

전화 : 1544-5860

팩스: 02-803-9197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544-5860

목 차

Ι.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Ш.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	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역	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 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 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생전포차 외 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804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아이센스에프앤비	법인설립등기일	사약	업자등록일	대3	표자	대표전화번	호	대표팩스번호
	2014.07.25	20	14.08.05	윤석	넉범	1544-586	60	02-803-9197
	법인등록번호		110111-54	76092	사업지	·등록번호	1.	13-86-8842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	업표지	주 소				
				서울	시 구로	구 디지털로33	길	11, 804호
사내이사	윤석범	생	전포차		(구로동	F, 에이스테크노	타유	^및 8차)
75410175	स्निच		외 8	대표ス	}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석범]	1544-5860		02-803-9197
관계	이름/상호	영	업표지			주 소		
				서울	날시 구호	로구 디지털로33	긷	11, 805호
	㈜아이센스에	아이센스PC방 외 1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계열회사	프앤씨			대표ス	ŀ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윤석범]	1544-5860		02-803-9197
	법인등록변	<u>]</u> 호 110111-		-4759043	사임	디자등록번호]	119-86-50905
관계	이름/상호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서울	시 구로	구 디지털로33	길 :	11, 1205ই
	㈜아이센스	CHOS	IM(초심)		(구로동	-, 에이스테크노	타유	박8차)
계열회사	티앤씨		외 1	대표ス	}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용민, 유	-지연	02-1800-5330)	02-803-9197
	법인등록변	<u></u> 호	110111-	-6891629	사입	검자등록번호	5	556-86-01317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생전포차	
상 호	생전포차 OO점	
상표(서비스표)	생전포차	출원번호 : 4020240174844
그 밖의 영업표지	世末 大手 では の は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か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11,935,568	6,658,656	5,276,912	22,124,093	-589,649	-541,573
2022	11,973,948	5,790,226	6,183,722	27,811,841	876,495	906,810
2023	11,861435	4,324,388	7,537,047	38,724,626	2,594,648	1,353,325

- 그 근거자료는 별첨 1과 같습니다.
-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매출액은 정확한 매출액이 아닐 수 있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이르 청지의	사업경력				
원인역구	부 이름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الدارة الم	대표이사	2014.08 ~ 현재	㈜아이센스에프앤비 대표이사	회사 업무총괄		
	윤석범		2011.12. ~ 현재	㈜아이센스에프앤씨 사내이사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Z-l	임원~	<mark></mark> (명)	직원수(명)	
시점	상근	비상근	식천구(영)	
2023년 12월 31일	1		84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주)아이센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기·맹사업 경영 기·맹사업 경영 2020.08~현재 등록번호:20171088)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고지의품격(등록번호:2021043)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고지의품격(등록번호:2021042)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0.08~현재 당만스테이(등록번호:20201042)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대문오리새끼 (등록번호:20215366)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맥나라볶이 (등록번호:20215366)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먹나라볶이 (등록번호:2021536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536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인서울독학제수학원 (등록번호:20214587)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망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PC망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자맹본부 (주)아이센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16.6~현재	(등록번호:20160560) 이라는
가맹본부 (주)아이센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주)아이센스에프앤비 기대사업 경영 (등록번호:20215366)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백나라볶이 (등록번호:2021536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백나라볶이 (등록번호:2021536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연소포자(등록번호:20215365)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인서울독학재수학원 (등록번호:20214587)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타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라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17.4~현재	아이센스블랙라벨PC존 (등록번호:20171088) 이라는
가맹본부 (주)아이센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0.08~현재	꼬치의품격(등록번호:20201043)
가맹본부 (주)아이센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등록번호:20215366)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등록번호:2021536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명나라볶이) (등록번호:2021536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생전포차(등록번호:20215365)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인서울독학재수학원 (등록번호:20214587)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87)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20.08~현재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변나라볶이 (등록번호:2021536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5365)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인서울독학재수학원 (등록번호:20214587)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기대시간 경영 이다. 연기에 가맹사업 경영 기대시간 경영 이다. 연기에 가맹사업 경영 기대시간 경영 기대시간 경영 이다. 연기에 가맹사업 경영 이다. 연기에 가망사업 경영	가맹본부	(주)아이센스에프앤비	가맹사업 경영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5366)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1.11~현재 생전포차(등록번호:20215365)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인서울독학재수학원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87)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18.10~현재 아이센스리그PC방				2021.11~현재	떡나라볶이
2021.11~현재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인서울독학재수학원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87)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이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리그PC방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리그PC방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87)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태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11.1~현재 이에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리그PC방				2021.11~현재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2021.11~현재 이태리다방 (등록번호:20214594)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이이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망사업 경영 가				2021.11~현재	(등록번호:20214587)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PC방 (등록번호:20130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리그PC방					이태리다방
계열회사 (주)아이센스에프앤씨 가맹사업 경영 2011.1~현재 100472)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8.10~현재 아이센스리그PC방				2021.11~현재	
기교되자 (17개 1년 - 개 교환자 기 8개 급 18 8 이 이센스리그PC방 2018.10~현재				2011.1~현재	
2018.10~현재	계열회사	(주)아이센스에프앤씨	가맹사업 경영		가맹사업 경영
				2018.10~현재	아이센스리그PC방 (등록번호: 20181055)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CHOSIM(초심)
		가맹사업 경영	2018.11~현재	(등록번호:20181195)이라는
	ത്രിറില് പടിത്ല്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아이센스티앤씨			밀킷슐랭 (등록번호:20212127)
			2021.09~현재	이라는 영업표지의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
생전포차	영업표지 사용	출원 일자 2024.09.23	출원 번호 : 4020240174844	㈜아이센스 에프앤비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 하여야 합니다.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생전포차를 시작한 날 : 가맹사업 개시 예정

2. 생전포차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아이센스에프앤비	생전포차	윤석범	가맹사업 개시 예정	804호
				(구로동, 에이스테크노타워8차)

3. 해당 가맹사업 업종

영업표지	업종				
n -11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생전포차	주점	미나리전, 해물파전, 오뎅, 주류 등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해당 가맹사업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ગે લો	2021.12.31.			5	2022.12.3	1.	2	2023.12.3	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_	_	_	_	_	_	_	_	_
서울	_	_	_	_	_	_	_	_	_
부산	_	_	_	_	_	_	_	_	_
대구	_	_	_	_	_	_	_	_	_
인천	_	_	_	_	_	_	_	_	_
광주	_	_	_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_	_	_	_
경남	_	_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_	_

5. 바로 전 3년간 생전포차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022						
2023	_	_	_	_	_	-

생전포차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 하십시오.

6. 생전포차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74	n = /al=	۸۱۷	ما ما سے ا	정보공개서	가맹	점 및 직영적	점 수
구분	상호/이름	업종	영업표지	등록번호	2021.12.31	2022.12.31	2023.12.31
		기타	만화카페		77/4	00/4	100/4
		서비스	벌툰	20160560	77/4	93/4	139/4
		PC방	아이센스 블랙라벨 PC존	20171088	173/8	193/7	193/8
		기타	꼬치의	00001042	CO	00/0	70/0
		외식	품격	20201043	63	92/0	78/0
가맹본부	㈜아이센스에프앤비	숙박	낭만 스테이	20201042	1	1/0	0/0
, , ,		분식	떡나라 볶이	20215364	/	/	/
		기타 교육	인서울독학	20214587	/	/	/
		한식	재수학원 매운오리 새끼	20215366	/	/	/
		커피	이태리 다방	20214594	/	/	/
	(무) 시 시 기 기 시 교 시 기	PC방	아이센스 PC방	2013010047 2	241/0	201/0	129/0
_11 AJ =1 \1	㈜아이센스에프앤씨	PC방	아이센스리 그PC방	20181055	4/0	3/0	0/0
계열회사		기타	CHOSIM	00101105	170/1	100/1	
	ത്രിറിലികടില്ലി	서비스	(초심)	20181195	173/1	188/1	
	㈜아이센스티앤씨	기타 도소매	밀킷슐랭	20212127	1/0	2/0	

※계열회사 ㈜아이센스티앤씨의 2023년도 브랜드 정보가 없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생전포차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인기 · 엔컨,	, 구가세 미포임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 말 가맹점 수		연간 평균 매출액		평균 (상한)	연간 매출액	(하한)	비고
	710°⊞ 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_	_	_	_	_	_	_	
서울	-	_	_	-	-	_	_	
부산	-	_	_	-	-	-	_	
대구	-	_	_	-	_	_	-	
인천	-	_	_	-	_	_	-	
광주	-	_	_	_	_	_	_	
대전	_	_	_	_	_	_	_	
울산	_	_	_	_	_	_	_	
세종	_	_	_	_	_	_	_	
경기	_	_	_	_	_	_	_	
강원	_	_	_	_	_	_	_	
충북	_	_	_	_	_	_	_	
충남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_	
전남	_	_	_	_	_	_	_	
경북	_	_	_	_	_	-	_	
경남	_	_	_	_	_	_	_	
제주	_	_	_	_	_	_	_	

당사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관리프로그램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 치로 포함하였으며, 영업일이 6개월 미만인 가맹점은 제외, 6개월이상 1년이 안 되는 가맹점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연간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하였습니다. 또한, 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가맹점은 그 근거를 확인하지 못해 추정근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생전포차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생전포차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	_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생전포차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생전포차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0]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지출 비용 기간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	인쇄물 등	연중	1 000 675	1 000 075	_	
판촉	판촉	연중	1,088,675	1,088,675	_	
	합계		1,088,675	1,088,675	_	

- ※ 분류의 어려움으로 총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상기금액은 (주)아이센스에프앤비의 전체 가맹사업에 대한 광고비 및 판촉비 합계액으로서 해당 브랜드에 대한 광고비 및 판촉비는 상기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비를 면제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와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 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아이센스에프앤비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또는 가맹희망자)	
보험기간	 보험책임 개시: 가맹계약 체결일과 최초 예치 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보험책임 종료: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 사업 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 	
보험금액	예치가맹금	
보장범위	가맹본부가 법령에서 정한 예치가맹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사업자 또는 가맹 희망자가 입은 손해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시사로부터 [1]회의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정조치 대신	의결번호 (사건번호)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법조문)	조치일자	조치내용
(주)아이센스 에프앤비	의결 제2024-247호 (2021가맹1850)	가맹사업법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제7조 제3항)	2024.07.03	시정명령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전기증설, 철거공사, 화장실, 수도공사, 소방시설, 기타 실외공사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인테리어, 주방설비 등 기타 비용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가맹비	11,0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가맹점 모집 및 영업 개시 전까지 소용된 실제 비용	-가입비 -운영노하우전수 -가맹점운영권 부여 -초기인력파견 -점포인력지원 -반환시 당사가 정한 기준의 위약금을 공제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교육 실시 전	교육 실시 후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종료일30일 이내의 미납채무가 있을 경우 잔존 채무와 손해배상액을 정산 후 귀하 에게 반환 되는 대가입니다.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보증금	2,000	예치 (보증보험증권 으로 대체	 가맹 계약 미이행 가맹금 미지급 물품대금 및 경영지도비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잔존 재무 와 손해 배 상액 등을 정산 후 반 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6,300
가맹비	11,000
교육비	3,300
보증금	2,000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비를 면제하는 경우, 가맹금 예치 및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66m²(20평)기준)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교
인테리어	가맹본부 협력업체	33,000	1,650	-계약시 50% -중도금 30% -완공시 20%	미공사 시	
간판	협력업체	5,500	275	-설치 3일전 : 100%	설치 전 계약 취소	
주방설비	협력업체	16,500	825	-설치 3일전 : 100%	설치 전 계약 취소	
가구	협력업체	3,300	165	-설치 3일전 : 100%	설치 전 계약 취소	
자동화기기	가맹본부	11,000	550	-설치 3일전 : 100%	설치 전 계약 취소	
광고비	가맹본부	3,300	165		설치 전 계약 취소	
총계		72,600	3,630			

※ 매장의 형태, 매장 운영형태에 따라 투자금은 변경될 수 있고 인테리어를 직접시공 시 가맹본부의 철저한 감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비는 공사 평수 1평당 55만원 (부가세포함) 이며 감리비를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도시가스공사, 전기증설, 화장실공사, 수도시설, 외부공사, 상하수도 유입공사, 소방설비, 철거비용 등)은 총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상기 지급기간 및 물품대금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총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이율 1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본부와 협의 후 가맹희망자가 직접 희망 영업지역 파악 → 현장조사 →
기메취리다기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본부에 통지
가맹희망자	가맹본부는유동인구,교통량,입지의특성,시장의특성,구매습관근린시설, 업종별특성
	등의 상황에 따른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다

당사는 점포 선정과정에서 귀하에게 조언을 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귀하에게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신규교육, 보수교육, 특별교육 등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성년을 원칙으로 함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생전포차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매장의 크기에 따라 주방, 설비 집기 비품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한 번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로열티	가맹본부	총매출액의 3.3%	매 익월 5일		상호, 디자인, 가맹시스템 등 사용비용	총매출(현금,카 드, 할인을 포함한 모든 금액)
광고 분담금	가맹본부	광고·판촉 분담기준에 의함	2주일 전	광고시행 이전	광고 시행 이후	
판촉 분담금	가맹본부	협의	2주일 전	판촉 실시 전	판촉 실시 이후	판촉 필요시
교육 훈련비	가맹본부	협의	2주일 전	교육 실시 전	교육 실시 이후	교육 필요시
POS 사용료	가맹본부	0~55	매월 말일			후불
점포환경개선 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참조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12%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의 차액가맹금 지급금액과 지급금액의 비율에는 가맹본부의 순수 마진이 표기한 게 아니며, 가맹본부의 물류비, 관리비,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표기한 것임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경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등을 점검하고 가맹본부가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취급 여부, 서비스 상태,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가 가맹점의 재고관리, 회계처리, 각종설비관리, 원·부자재관리 등이나 기타 점포의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영업시간 중에 가맹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당사에 재 가맹비 금 11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 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해당 가맹사업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없습니다. 단 양도 시 가맹본부의 서면 동의는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신규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교육비, 보증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양도자의 잔여기간 승계가 아닌 갱신권 보장기간인 10년을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의 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 관리자산의 반환의무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생전포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영업에 필요한 물품 및 상품을 당사 생전포차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표의 거래형태에 강제로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 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생전포차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 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생전포차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의 연간 거래총액은 가맹본부의 수수료를 표기한 것이 아니며, 가맹본부의 제품개발비, 물류비, 관리비, 인건비,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표기한 것 입니다.

2) 당사가 생전포차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청도 미나리전 새우 미나리전 제주 당근전 파무침 한돈 육전 해물파전 김치전 옥수수전 치즈고구마감자전 꼬막파전 주전자어묵탕 한돈 전라면 김치어묵우동 조개홍합탕 김치볶음밥 매콤 닭발 30CM 치즈 돈까스 닭볶음탕 오이샐러드 와사비 꿀 토마토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ㆍ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

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 HI	1회 위반: 구두 경고	
다른 가맹점사업자	공급받은 상품 및 메뉴	꽈매하 수 없으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당사 또는 지정업체에서 공급받은 모든 상품, 용역('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 품·용역의 판매 제한'에 명시된 내역)	가매보보가	홈페이지에 공지, 유선, 팩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혐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이된 어ブ 베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생전포차와 동일한 업종 (주점업)	생전포차	_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 직선 반경(점포 간 이격거리) 500m	설정기준에 의해 가맹희망자와 협의 후 설정별지에 영업지역 표시(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 단,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지하상가, 대학, 기차역, 전철역, 터미널, 공항, 경기장, 휴게소, 호텔, 종합병원, 시장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영업지역(특수상권)은 위 설정과는 별도의 영업지역입니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 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 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 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지역 재조 정 등 조건 변경에 대한 통 지 → 변경된 계약조건에 대 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	가맹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동의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영업 지역 변경 등 계약갱신 진행 후 신규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별다른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맹본부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 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 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당 가맹사업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미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직영점 포함)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_	_	_	_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_	_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생전포차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Ó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Ó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 2항
Ó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 2항
Ó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 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0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2항
0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 는 제외합니다)	6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맹계약서)	관련 계약조문
1. "을"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66 /11 /1 A E
신청이 된 경우	
2.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3. "을"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제품 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갑"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갑"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갑"의 상품을 가맹사업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5. "을"이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을"의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7. "을"의 채무가 일정수준(보증금 등)을 넘은 경우 또는 대금지급(로열티 등)을	35조 1항
연체한 경우	
8.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11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	(13조 2항
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27조 1항
9. "을"이 제15조의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	인용)
가맹금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을"이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동종 업종의 영업을 하는 경우	
11. "을"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을"이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1회 이상 위반	
한 경우	
13. "을"이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갑"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추가하거나 "갑"에 의해 변경된 서비스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14."을"이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5. "을"이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17.	"을"이 제24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을"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하거나 제2항에 의한 품질 검사를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을" 또는 "을"의 직원이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갑"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을"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이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을"이 "갑"과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이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점포의 권리이전, 명의변경을 했을 경우 "을"이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갑"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본계약의 준수사항 위반 시, 특약사항 위반 시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공급자로부터 정해진 초도 물품과 상품 기타 기기의 공급 주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을"의 가맹점에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의 가맹점에 적정 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을"이 제8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한 경우 "을"이 가맹점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을 가맹점 개점 전까지 완료하지 못한 경우	35조 1항 (13조 2항 27조 1항 인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 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0	"을"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5조 2항
Ó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5조 2항
0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을"이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5조 2항
0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갑"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5조 2항
0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35조 2항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0	"을"이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갑"이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35조 2항
0	"을"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5조 2항
0	"을"이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 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5조 2항
Ó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5조 2항

귀하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1개월 전에 당사에 계약해지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의 종료시까지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가맹점을 정상 운영하여야 합니다.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1 M M S G 7 A S S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 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당사

당사가 승인을 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잔여 계약기간 포함)를 포괄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승낙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교육비, 로열티(총매출의 3.3%(부가세 포함))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7일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양수도 승인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양도자의 잔여기간 승계가 아닌 갱신권 보장기간인 10년을 보장)을 원할 경우 신규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보증금,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양수인에게 양도한 가맹점사업자는 양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와 계약한 영업지역내에서 본 계약과 동종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지나, 가맹점운영권은 가맹본부에 한해 대리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능 (상속인 사후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 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사에 한해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 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순이익의 50% 지급
업무위탁	본사에 한해 가능	모든 권리의무	본부에 서면 통보 → 본부 승인 → 교육 수료	순이익의 50%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귀하가 생전포차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생전포차와 동일한 업종 (주점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 가 여부 통지 → 완료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생전포차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15:00 ~ 03:00 (가맹본부와 협의 시 조절 가능함)	연중 무휴 (가맹본부와 협의 시 조절 가능함)	문의: 당사(1544-58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전 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 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20평 기준)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사전 통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필요시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ㆍ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분기	본사 관리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생전포차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ㅂ	구분 광고 성격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ਮੀ ਹ
ाच	3 T 78 4	본사	가맹점	· 한참 설시	비고	
	상품광고	ਹ} ⊐ ਮੀ	ฮโ⊐นไ	계형 고그 . 카메키시 취시		
광고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제작(·82배전)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별도공고)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 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 후 최종 분 담금 확정	개별 행사,		

판촉의 경우, 기획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 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광고·판촉비용의 소모적인 낭비를 줄이고 다른 가맹점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본 부 또는 당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 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 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생전포차 가맹사업 운영상 제공받은 경영노하우와 영업규정, 기타 이에 준하는 영업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상의 가맹사업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영업 규정 등 각종 자료를 임의로 인쇄, 복사, 분리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벌,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가맹계약서

- 1) 제19조(비밀유지의무), 제20조(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에게 위약벌로 금오천만원(부가세없음)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제36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금일십만원(부가세없음)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3) 제25조(자점매입금지)를 위반할 경우 금일천만원(부가세없음)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4) 가맹점사업자가 무단 폐점, 무단 영업표지 변경, 가맹본부로부터 양수도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포를 양도한 경우 금일천만원(부가세없음)을 위약벌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이 중도에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은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해지일	위약금 (부가세 없음)		
계약체결 후 가맹점 오픈 전	금 일천일백만 (11,000,000)원		
가맹점 오픈 후	해지 일 직전 12개월	. "월 평균 매출액"의 10% x A	
계약 기간	A	1년 미만 시 3개월분	
만료 전 시 해지	(잔여계약기간 기준)	1년 이상 6개월분	

	1년 6개월 이상 시 12개월분
· · · · · · · · · · · · · · · · · · ·	우에는 최초 오픈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시의 평균 매출액으로 계산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ㆍ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20평, 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_	30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 방문, 홈페이지 -		
상 담	- 전화 상담 - 사업내용상담		p13~p18 참조
정보공개서 제공	- 정보공개 사항 검토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제공 14일 후 계약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 계약체결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 계약 14일전 제공	
가맹계약체결	- 가맹계약서 1부씩 교부 보관, 일정협의	D-30
가맹금 예치	- 당사와 계약된 은행에 가맹금 예치	D-30~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8~27(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6(1일)
점포집기, 주방기기입고	- 점포집기, 주방기기, 초도물품 입고	D-15~10(5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기기, 물품 입고	D-26~6(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4~1(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가맹본부 부담	가맹본부 부담	지급절차	비용부담
사유	비용항목	비용비율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건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 이위생이나 인하에 통일성을 유지하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삼업의 투관하게 가맹점사업자 추가 함에 따라 소요되는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우에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라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걸쳐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 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 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리자 코기티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 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 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 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 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 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 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 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 명	가맹점사업 자부담(실 비)	당사 관리팀 (1544-5860)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 용	비고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생전포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서비스 방법, 조리 교육 등	이론, 실습	개점 전	필수교육
수시 교육	신 메뉴 가공, 신서비스 제공, 종업원 관리 실무 등	이론, 실습	관리부 직원의 매장방문시 수시	필요시
보수 교육	필요시 내용 통부	이론, 실습	필요시	필요시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생전포차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용	비고
신규 교육	5일	3,300(1인기준)	최초 계약시 이수
수시 교육	별도 계획	별도책정	신 메뉴 출시 등, 경비 발생 시 비용 별도 추가
보수 교육	별도 계획	별도책정	필요시 실시 등, 경비 발생 시 비용 별도 추가

^{*} 교육 일정 및 시간은 당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Ⅸ.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	_
2	인천	_	_
3	대구	_	_
4	서울	_	_
5	인천	_	_
6	대구	_	_
7	서울	_	_
8	인천	_	_

[당 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_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
_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544-5860)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 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023년, 2022년, 2021년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공급가격 상하한